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필수유지 의료행위〉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17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3.

(3) 회 부 일 : 2026. 3.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 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

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9조의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이하 “필수유지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u> <u>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u> <u>2.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u> <u>3. 제1호와 제2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u>

	(영상검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1. ~ 3. (생략)	-----
<신설>	-----
4.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9조의2를 위반한 자
	4.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¹⁾은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등 업무가 정지될 경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하면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어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인의 집단휴진 등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²⁾가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을 차용하여 의료인의 집단행동도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제22조의2 관련)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2) <의료인의 진료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석>

-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실시하기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제45조),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 위법
 ⇒ 단,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집회 등 집단행동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안이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하고 있는 업무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쟁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와 유사하며, 위반 시 법정형도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위반과 같음.

<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와 개정안의 필수유지의료행위 비교 >

	필수유지업무제도	필수유지의료행위제도
근거	노동조합법	의료법 개정안
필수유지 업무 또는 의료행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 위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 위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주체	노동조합-사용자관계	노동조합-사용자관계 外 관계
유지기준 설정	필수유지업무협정	-
위반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의료법」 제59조에서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의료인의 집단 휴업 등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지도·명령 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3)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 연혁 >

- 1951년 의료법 제정 시 “의료업자에 대한 지도 명령” 규정
- 1962년 의료법 개정 시 “의료업자”를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구체화
- 1994년 의료법 개정 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신설
- 2002년 의료법 개정 시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및 업무개시명령권자에 기존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지도나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인이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됨.⁴⁾

4)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법률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며, 의료인은 국가로부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면허를 부여받았기 때문임.

□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발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1994년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신설된 이래로 이를 발동한 사례는 4차례에 불과함.⁵⁾

- 업무개시명령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⁶⁾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⁷⁾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⁸⁾ 등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⁹⁾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¹⁰⁾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사례(현재까지 총 4회): 2000년 의약분업추진, 2014년 원격의료반대, 2020년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반대, 2024년 의대정원확대 반대

6) 인격 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와 선원법 제25조의2는 강제근로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7)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단, 병역의 경우 헌법 제39조 국방의무에 의해 정당화됨.

8)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포함

9) 연합뉴스, “전공의들, ILO에 개입 요청…”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위배”, 2024.3.13.

10)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2024.12.

- 다만, 헌법 제36조제3항¹¹⁾ ‘국민의 보건권’에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며, 의료인의 경우 국가가 엄격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단기간에 대체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워 법익침해에 대한 수인한도가 높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은 일정한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않은 전공의의 청구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진 바는 없음.¹²⁾

□ 또한, 실제로 의사집단행동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의료인의 현장 복귀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벌어진 집단 행동에 대응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중 80명이 현장에 복귀하였다고 밝혔으나,¹³⁾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부조사 결과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는 입장이었음.¹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한 전공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가 이후 의정 간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이를 취하한 바 있음.

11)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2) 2021.9.7. 2021헌마937, 2021.10.26. 2021헌아600

13) 연합뉴스, “[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뒤 집단휴진 참여 약 80명 현장 복귀””, 2020.8.28.

14) 의협신문, “대전협 비대위 “전공의 80명 복귀 정부 발표, 사실무근””, 2020.8.28.

- 2024년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813명 등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 발동하였으나, 같은 해 6월까지도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자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였음.¹⁵⁾

□ 이처럼 의료인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현재의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의료인의 업무 복귀를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공백 발생 시 최소한의 필수 의료행위만이라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서의 필수유지의료행위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는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필수유지의료행위의 범위는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 제59조의2제4호는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그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개혁 현안 관련 브리핑”, 2024.6.4.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그런데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예컨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려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업무가 이루어질 정도로만 인원과 운영시간을 축소하면 되는 것인지, 이 경우 최소한의 인원과 운영시간 등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노동조합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협약이 불성립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사업체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도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¹⁶⁾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정안의 경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과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노동조합법의 입법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개정안에 의하여 신설되는 일명 ‘필수유지의료행위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만, 필수유지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 (신중검토)

-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이 준수되도록 신중하여야 함.
-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의 예시 등이 열거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해석상 혼란이 유발될 여지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있으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어나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종사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업종을 바꾼 의료인들이 수사·재판에 과도하게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과잉금지의 원칙 측면에서 의료인 자격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의료행위를 지속하도록 일괄적으로 강제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법익을 해할 목적을 범죄성립 구성요건으로 명시한 '목적범' 형태로 규정하여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를 최소화함이 상당함.
- 참고로, 변호사가 '무변촌'(無辨村)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법률사무소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은 필수유지업무의 정지 등을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이고, 쟁의행위 아닌 다른 사유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하여도 이를 제재하고 있지 않음.

3) 대한의사협회 (반대)

- 현행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중복·중첩되는 이중규제이며,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안의 취지와 달리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가 우려됨.
- '의료행위'에 대한 완전한 개념 정립도 미비한 상황에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은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음.

4)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한 초법적 규제이고, 의료인의 헌법상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필수요료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책무를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이는 오히려 필수요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5) 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개정안은 집단행동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용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요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일정 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